

# 2022년 제5차 강소특구 지역특성화 육성 사업 통합공고

UNIST에서는 울산 울주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활성화하고, 특구 내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울산 울주 강소특구 지역특성화 육성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6일  
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

## 1 공통사항

■ 지원규모 : 총 1,090백만원 (약 45社 내외 지원)

■ 지원기간 : 2022.10.11. ~ 2023.01.31.

※ 총 사업기간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,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■ 지원내용

(단위:백만원)

지원분야	사업명	지원내용	2022년 사업 규모	5차 공고 예산
기술 특성화	지역기업 성장지원	<산학 공동 R&D 기술사업화 지원> • 대상기업의 제품 기능 등을 기술핵심기관이 직접 기술개선 지원 • 최대 60백만원 × 10개 기업 내외	600	0
		<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> • 대상기업의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지원 • 기타 제품과 관련된 직접적인 역량 강화 지원 • 최대 35백만원 × 9개 기업 내외	315	15
		<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지원> • 대상기업 제품의 성능평가,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 • 최대 15백만원 × 4개 기업 내외	60	0
		<애로기술자문> • 기업 수요 중심의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 해결 • 최대 1.5백만원 × 10개 기업 내외	15	7.5
경영역량 강화	Open Innovation 사업화 지원	• 특구 내 신사업을 추진하는 혁신역량기업의 기획부터 전주 기 지원 • 교내 연구실, 연구센터에서의 사업 발굴 기획 지원	80	20
특화지원	ESG 경영진단	•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업별 ESG 컨설팅 지원 • 최대 2백만원 × 10개 기업 내외	20	18

※ 특화분야: 첨단전지핵심소재(고성능 이차전지, 수소연료전지, 태양전지 등), 경량 소재 및 스마트부품(미래형 전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)

※ “5차 공고 예산”이 0인 세부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지원하지 않음

■ 지원절차(공통)

단계	일정	추진내용
모집공고	'22.09.26.	- UNIST 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 게재 - 기업 대상 세부 프로그램 홍보 등
↓		
신청서접수	'22.10.03.	- 지원신청서 과제 내용 및 제출서류 검토
↓		
선정평가 (UNIST)	'22.10.05. (예정)	- 외부 전문가활용 분야별 평가위원 선정 - 선정평가 지표를 만족하는 수행기업 선정
↓		
과제 협약 등	'22.10.11.	- 협약체결(특화지원기관) 또는 확약서(수혜기업) 제출
↓		
사업수행 및 중간점검	사업기간 중	- 과제 추진 현황 확인 - 중간 성과 점검 등
↓		
사업결과 점검 (UNIST)	'22.02.	- 세부과제별 결과보고서 접수 및 성과 취합 - 결과물 평가위원회 개최 - 세부과제 결과 및 달성도 재단 공유
↓		
세부사업 정산	'22.02.	- UNIST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 정산 및 과제 종료

※ 사업 추진 현황 및 자체기준 소급 적용 등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절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■ 기업별 지원내용

구분	사업명	사업비(최대)	사업기간
지역기업 성장지원	산학 공동 R&D 기술사업화 지원	60,000천원	22.10.11. ~ 23.01.31.
	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	35,000천원	22.10.11. ~ 23.01.31.
	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지원	15,000천원	22.10.11. ~ 23.01.31.
	애로기술자문	1,500천원	22.10.11. ~ 23.01.31.
	Open Innovation 사업화 지원	40,000천원	22.10.11. ~ 23.01.31.
	ESG 경영진단	2,000천원	22.10.11. ~ 23.01.31.

■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신청기간: 2022.09.26.(월) ~ 2022.10.03.(월) 24:00까지  
  - ※ 애로기술자문 및 ESG 경영진단은 상시 지원 가능합니다.
- 지정된 주소로 이메일 제출  
  - 제출처: [10002980@unist.ac.kr](mailto:10002980@unist.ac.kr) 특구사업팀

■ 신청자격 검토사항

○ 공고문 내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

- 신청 자격 부적합 시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

○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- 기술핵심기관의 총괄책임자는 특화지원기관, 수혜기업,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. 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않음.

구분	사전지원제외
검토 기준	<p>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업의 부도</li> <li>2.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</li> <li>3. 민사집행법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(단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</li> <li>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li> <li>5.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). 이때,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* 상기의 신용등급 'BBB'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 -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「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 등)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</li> <li>6.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</li> <li>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</li> </ol>
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총괄주관기관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개별과제 지원제외 처리</li> </ul> </li> <li>○ 개별과제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, 외부전문기관, 외부전문기관대표자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괄주관기관에 개별과제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, 외부전문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</li> </ul> </li> <li>○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울산울주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 자체기준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</li> </ul>

※ 다만, 세부지원 내용 중 애로기술자문 및 ESG 경영진단은 사전지원제외 대상 검토 예외

■ 유의사항

- 신청자는 신청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
  -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
  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
  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  - 「대외무역법」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-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기관은 UNIST의 요청에 따라 수행과제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UNIST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함
- 선정된 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류 및 사업성과를 증빙 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UNIST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
- 선정된 기관은 협약 종료 이후 5년간 UNIST 또는 사업관리기관 소속 직원의 과제진행 현장확인, 관련서류의 열람, 관련자료의 제출요청 등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기관에게 있음
-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,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비에 불포함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■ 관련법령 및 규정

<b>근거법령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*</li>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</li> <li>○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</li> <li>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</li> <li>○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</li> </ul>
<b>관련규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</li> <li>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</li> <li>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</li> <li>○ 울산울주강소특구 자체 규정</li> </ul>

## 1. 사업개요

## ■ 사업목적

- 특화분야 기업 성장지원을 통해 연관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 도모,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울산 울주 강소특구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

## ■ 사업내용

- 대상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(시제품제작, 해외진출컨설팅, 경영컨설팅, BM 개발, 시장조사, 투자유치컨설팅, 판로개척 등)을 직접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

## 2. 지원내용

## ■ 예산규모 : 315백만원 (대상기업 9개社 내외, 기업당 최대 35백만원)

- ※ 상기 예산은 평가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,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,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

## ■ 지원기간 : 2022.10.11. ~ 2023.01.31. ※ 지원기간은 협약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■ 지원대상 (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)

- 울산 울주 강소특구 내 소재기업
- 울주군 내 소재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
  - ① 특화분야기업
    - ※ 특화분야 : 첨단전지핵심소재(고성능 이차전지, 수소연료전지, 태양전지 등), 경량소재 및 스마트부품(미래형 전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)
  -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
  -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

## ■ 지원내용

- 대상기업이 예산 한도 내에서 맞춤형 지원 목록 중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기술사업화에 활용
- 기업 맞춤형 지원목록

번호	지원명	상세내용	상한 (단위:천원)	비고
1	시제품 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품화에 앞서 성능을 검증·개선하기 위해 핵심기능만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 제작 지원</li> <li>- 직접 제작 시, 한도 내 인건비, 재료비 등 계상 가능</li> </ul>	20,000	자체제작 or 외부전문기관 활용
2	제품 고급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개선, 성능 업그레이드, 디자인 개선, 홍보·광고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선</li> </ul>	15,000	외부전문기관 활용
3	경영·기술사업화 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TRM 수립 (기업맞춤형 기술 로드맵)</li> <li>• 기업의 경영·BM설계·세무·회계·투자유치·시장조사·해외진출·내부역량강화 등 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</li> </ul>	10,000	외부전문기관 활용
4	기술고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허동향분석, 선행특허조사, 특허방어전략 수립, 특허맵 구성 및 추가 R&amp;D 기획 등 기존 기술 고도화 지원</li> </ul>	15,000	외부전문기관 활용

※ “5차 공고”에 한해 기업별 최대 15,000천원 이내 비목별 상한 고려하여 예산 편성

### 3. 추진체계



### 4.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

#### ■ 평가항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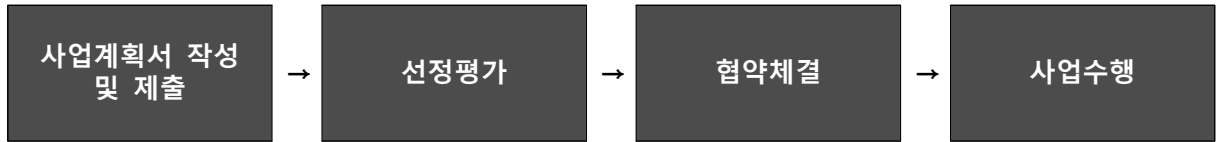
평가항목	세부항목	비중
지원의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의 타당성 및 계획의 충실성</li> <li>• 과제수행 목표의 타당성</li> <li>• 대표자 및 책임자의 과제 수행 의지</li> </ul>	40
전문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수행 역량</li> <li>• 활용 예정 전문기관의 전문성</li> </ul>	30
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술·기술·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</li> <li>• 지원 성과의 활용 가능성</li> </ul>	30
<b>합 계</b>		<b>100(%)</b>

- ※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이거나, 지역특화분야기업 및 이전 울산 울주 강소특구 지역특성화 육성사업 최종 평가결과가 “우수”인 경우 5점 내외 가점을 부가할 수 있음
- ※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#### ■ 평가방법

-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, 발표평가, 현장방문평가, 토론평가,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-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‘지원가능과제’,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‘지원제외’로 분류함
- ‘지원가능과제’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‘지원가능과제’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- ※ 관련규정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
## 5. 신청방법 및 절차



- 신청기업은 『[별지 2] 사업계획서 양식(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)』을 제출
- 사업계획서 기반 선정평가 및 선정 시 협약체결

### ■ 제출서류

<b>필수</b>	① 사업신청 공문 (자사양식) 및 사업계획서 ([별지 2] 참조)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([별지 2] 참조) ②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([별지 2] 참조) ③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기준표 ([별지 2] 참조) ④ 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 ([별지 2] 참조)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
<b>해당시</b>	① 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 및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 ② 연구소기업 등록증 ③ 투자계약서, 주주명부

## 6. 문의처

- 담당자: 특구사업팀 김의준 연구원
- 연락처: 052-217-1764

### 3

## 세부지원내용 : 애로기술자문

### 1. 사업개요

#### ■ 사업목적

- 특화분야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연관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 도모,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울산 울주 강소특구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

#### ■ 사업내용

- 기업 수요중심의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One-point 전문가 자문 지원

### 2. 지원내용

#### ■ 예산규모 : 15백만원 (대상기업 10개社 내외, 기업당 최대 1.5백만원)

※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,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

#### ■ 지원기간 : 2022.10.11. ~ 2023.01.31. ※ 지원기간은 협약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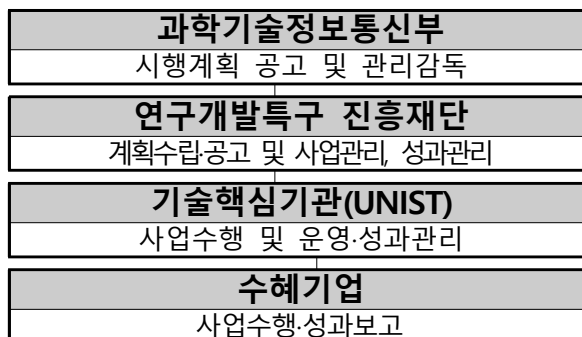
#### ■ 지원대상 (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)

- 울산 울주 강소특구 내 소재기업
- 울주군 내 소재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
  - ① 특화분야기업
    - ※ 특화분야 : 첨단전지핵심소재(고성능 이차전지, 수소연료전지, 태양전지 등), 경량소재 및 스마트부품(미래형 전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)
  -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
  -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

#### ■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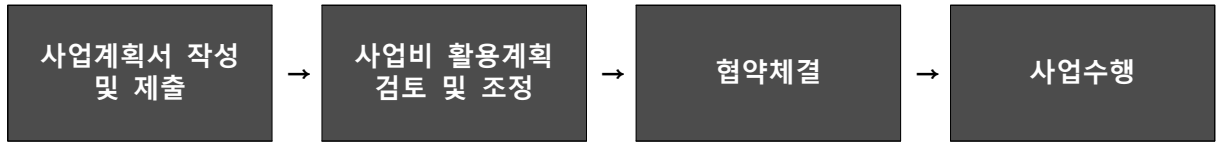
- 애로기술, 기술개발, 제품화, 기술사업화, 기술마케팅 등 기술 분야 및 법률, 회계, 세무, 투자 등 경영 분야에 대한 One-point 자문
- 지원방법: 온·오프라인 자문, 현장방문 등 상황별 운영

### 3. 추진체계





#### 4. 신청방법 및 절차



#### ■ 제출자료 목록

필수	① 애로기술자문 신청서 ([별지 4] 참조) ②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
해당시	① 연구소기업 등록증 ② 투자계약서, 주주명부

#### 5. 문의처

- 담당자: 특구사업팀 고민정 연구원
- 연락처: 052-217-1763

## 1. 사업개요

### ■ 사업목적

- 특화분야 관련 기술핵심기관의 공공기술을 도입하고, 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전주기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

### ■ 사업내용

-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·수요기업 DB를 구축하고, 수혜기업이 자율적으로 전문기관을 선택하여 수혜기업의 전주기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

## 2. 지원내용

### ■ 예산규모 : 80백만원 (대상기업 2개社 내외, 기업당 최대 40백만원)

- ※ 상기 예산은 평가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,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,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

### ■ 지원기간 : 2022.10.11. ~ 2023.01.31. ※ 지원기간은 협약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■ 지원대상 (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)

(필수요건) 기술핵심기관의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

(소재지요건) 아래 2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

- 울산 울주 강소특구 내 소재기업
- 울주군 내 소재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

#### ① 특화분야기업

※ 특화분야 : 첨단전지핵심소재(고성능 이차전지, 수소연료전지, 태양전지 등), 경량소재 및 스마트부품(미래형 전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)

####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

### ■ 지원내용

- 이전한 특허기술이나 노하우를 활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이를 활용한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·경영·재무·인사·마케팅·산업 및 시장분석·비즈니스모델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초기 사업화 전략 수립
- 사업화 전략 수립 과정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필요시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형식으로 활용

### ■ 지원방법

- 대상기업이 예산 한도 내에서 맞춤형 지원 목록 중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기술사업화에 활용

○ 기업 맞춤형 지원목록

연번	지원명	상세내용	상한 (단위:천원)	비고
1	특허전략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서비스 지원으로 이전 기술 관련 권리보호 및 확장 등을 위한 특허전략수립 등</li> </ul>	20,000	외부전문기관 활용
2	추가 R&D 기획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후속사업 연계를 위한 R&amp;D 기획 지원</li> <li>- 이전기술사업화와 관련한 추가 R&amp;D 전략 수립</li> <li>- 사업화 관련 기술·시장동향 등 조사</li> <li>- 이전기술사업화 관련 타겟 R&amp;D 및 사업화 지원사업 맞춤형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</li> </ul>	15,000	외부전문기관 활용
3	경영·기술사업화 전략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TRM수립 (기업맞춤형 기술 로드맵)</li> <li>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</li> <li>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컨설팅</li> <li>기술사업화 관련 법률·회계 자문</li> <li>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IR 자료 제작</li> </ul>	10,000	외부전문기관 활용

※ 기업별 최대 40,000천원 이내 비목별 상한 고려하여 예산 편성

### 3. 추진체계



### 4.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

#### ■ 평가항목

평가항목	세부항목	비중
지원의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의 타당성 및 계획의 충실성</li> <li>과제수행 목표의 타당성</li> <li>대표자 및 책임자의 과제 수행 의지</li> </ul>	40
전문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기업의 지원사업 수행 역량</li> <li>활용 예정 전문기관의 전문성</li> </ul>	30
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술·기술·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</li> <li>지원 성과의 활용 가능성</li> </ul>	30
<b>합 계</b>		<b>100(%)</b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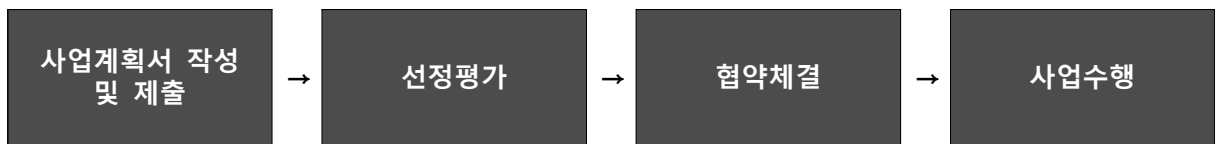
※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이거나, 지역특화분야기업 및 이전 울산 울주 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사업 최종 평가결과가 “우수”인 경우 5점 내외 가점을 부가할 수 있음  
 ※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## ■ 평가방법

-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, 발표평가, 현장방문평가, 토론평가,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-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‘지원가능과제’,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‘지원제외’로 분류함
- ‘지원가능과제’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‘지원가능과제’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
※ 관련규정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
## 5. 신청방법 및 절차



- 신청기업은 『별지 5』 사업계획서 양식(Open Innovation 사업화 지원)을 제출
- 사업계획서 기반 선정평가 및 선정 시 협약체결

## ■ 제출서류

<b>필수</b>	① 사업신청 공문 (자사양식) 및 사업계획서 ([별지 5] 참조)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([별지 5] 참조) ②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([별지 5] 참조) ③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기준표 ([별지 5] 참조) ④ 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 ([별지 5] 참조)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
<b>해당시</b>	① 연구소기업 등록증 ② 투자계약서, 주주명부

## 6. 문의처

- 담당자: 특구사업팀 김의준 연구원
- 연락처: 052-217-1764

## 5

# 세부지원내용 : ESG 경영진단

### 1. 사업개요

#### ■ 사업목적

- 울산 울주 강소특구 및 울주군 내 지원대상 기업의 ESG 경영 현황 진단 및 개선점 도출

#### ■ 사업내용

-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업별 ESG 컨설팅 지원

### 2. 지원내용

#### ■ 예산규모 : 20백만원 (대상기업 10개社 내외, 기업당 최대 2백만원)

※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,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

#### ■ 지원기간 : 2022.10.11. ~ 2023.01.31. ※ 지원기간은 협약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 ■ 지원대상 (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)

- 울산 울주 강소특구 내 소재기업
- 울주군 내 소재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
  - ① 특화분야기업
    - ※ 특화분야 : 첨단전지핵심소재(고성능 이차전지, 수소연료전지, 태양전지 등), 경량소재 및 스마트부품(미래형 전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)
  -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
  -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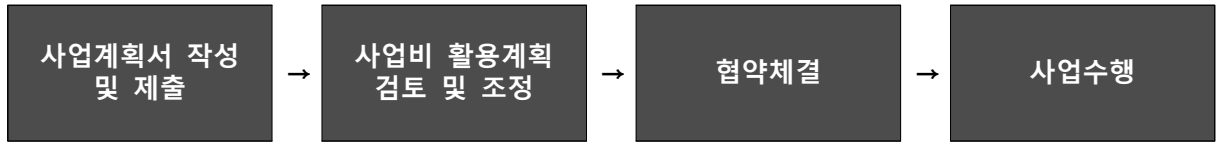
#### ■ 지원내용

- 수요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경영 컨설팅 및 자문
  - 지원방법: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ESG 경영 컨설팅 실시

### 3. 추진체계



#### 4. 신청방법 및 절차



#### ■ 제출자료 목록

필수	① ESG 경영진단 신청서 ([별지 6] 참조) ②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
해당시	① 연구소기업 등록증 ② 투자계약서, 주주명부 ③ 외부전문기관 사업자등록증

#### 5. 문의처

- 담당자: 특구사업팀 고민정 연구원
- 연락처: 052-217-1763

□ **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분류구분**

기술 핵심기관	대분류	중분류	소분류	
UNIST (울주)	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(70~73)	연구개발업	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(M701)	
		건축 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M729)	
	제조업 (10~34)	1차 금속 제조업		1차 비철금속 제조업(C242)
				금속 주조업(C243)
				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C222)
		금속 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		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(C259)
		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(C291)
		선박 및 보트 건조업(C311)		
	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9)	
		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C340)	
		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	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(C132)	
	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(C211)	
			전기장비 제조업	기타 전기장비 제조업(C289)
		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(C282)		
		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 변환·공급·제어 장치 제조업(C281)		
		전자 부품 제조업(C262)		
	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(C191)	
			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기초 화학물질 제조업(C201)
		기타 화학제품 제조업(C204)		
		화학섬유 제조업(C205)		

□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분류코드

특화분야			KSIC 매칭
대분류	중분류	소분류	
미래형 전지 산업	이차전지	전기차용 고용량 배터리 양극/음극소재, 이차전지 고속충전을 위한 전해질 제조기술	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(M701) /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M729) / 1차 비철금속 제조업(C242) / 금속 주조업(C243) /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C222) /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(C259) /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(C291) / 선박 및 보트 건조업(C311) /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9) /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C340) / 식물 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(C132) /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(C211) /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(C301) /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(C289) / 일차전지및축전지제조업(C282) / 전동기,발전기및전기변환·공급·제어장치제조업(C281) / 전자부품제조업(C262) / 코크스및연탄제조업(C191)/기초화학물질제조업(C201) / 기타화학제품제조업(C204)
	수소전지	수소연료전지분리막	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(M701) /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M729) / 1차 비철금속 제조업(C242) / 금속 주조업(C243) /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C222) /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(C259) /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(C291) / 선박 및 보트 건조업(C311) /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9) /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C340) / 식물 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(C132) /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(C211) /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(C301) /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(C289) /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 변환·공급·제어 장치 제조업(C281) / 전자 부품 제조업(C262) /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(C201) /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(C204)
	태양전지	유리창 부착형 투명 태양전지	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(M701) /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M729) /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C222) /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(C259) /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(C291) /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9) /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C340) / 식물 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(C132) /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(C211) /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(C301) /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(C289) /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 변환·공급·제어 장치 제조업(C281) / 전자 부품 제조업(C262)
	탄소섬유 복합재	탄소섬유 복합재 기반 경량 배터리 팩 구조물, 3D프린팅 기반 경량부품 생산장비, 초경량/고강도 프레임	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(M701) /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M729) /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C222) /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(C291) / 선박 및 보트 건조업(C311) /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9) /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C340) / 식물 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(C132) /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(C211) /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(C289) /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 변환·공급·제어 장치 제조업(C281) / 전자 부품 제조업(C262) /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(C191) /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(C201) /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(C204) / 화학섬유 제조업(C205)
	무선 전력송신	무선 전력송신 및 충전 모듈, 초저전력 스마트센서	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(M701) /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M729) / 1차 비철금속 제조업(C242) / 금속 주조업(C243) /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C222) /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(C259) /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(C291) /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9) /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C340) /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(C289) /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(C282) /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 변환·공급·제어 장치 제조업(C281) / 전자 부품 제조업(C262)